

영등포구의회
제174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고기판의원 대표발의】



2013. 4. 29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01호로 2013년 4월 25일 고기관의원 외 6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3년 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재위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규정하고,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임기만료 및 해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재위촉에 필요한 경과기간 규정을 신설함.(안 제17조)
- 나.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(안 별표 2(제10조제5항 관련)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『지방자치법』 제8조
- 『지방자치법 시행령』 제8조

5. 검토의견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는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,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.7.22일 제정되었으며,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재위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규정하고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7조에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2년 이내에는 재위촉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별표 2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음.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는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2.6.21일 개정 조례에 따라 수반되는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위원이나 위촉 해제된 위원 등의 재위촉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,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대상과 범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※ 2012.6.21 개정내용 : 연임할 수 있다 ⇒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제8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

2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8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)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별표 1] <개정 2011.10.14>

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(제8조 관련)

구 분	시 · 도 사 무	시 · 군 · 자 치 구 사 무
타. 읍·면·동 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무	읍·면·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 지원	읍·면·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